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흥군 군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2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22 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투자유치로 인규유입 효과와 청년 일자리 고용창출,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 삭제 (안 별표4)
-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. 규정삭제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7. 22. ~ 7. 26.(5일간)

5. 의견제출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59542/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(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)
- 2) 전화 : 061-830-6065
- 3) 팩스 : 061-830-5595
- 4) 고흥군의회 홈페이지 : www.council.goheung.go.kr

6. 기 타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(☎830-606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 제 호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“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.” 규정을 삭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4]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8제4호 관련)</p> <p>※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<u>12층</u>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</p> <p>가. ~ 어. (생략)</p>	<p>[별표 4]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8제4호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제 ></p> <p>가. ~ 어. (현행과 같음)</p>

